

第118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2月20日(水) 14時05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 議事日程

1. 2002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2.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2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5. 昌信第6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 및 事業計劃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6. 崇仁第3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7.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8. 2002年度 建設交通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審査된案件

- |  |     |
|--|-----|
| 1. 2002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 2面  |
| 2.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              | 3面  |
|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 3面  |
| 4. 2002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 18面 |
| 5. 昌信第6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 및 事業計劃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 | 19面 |
| 6. 崇仁第3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          | 19面 |
| 7.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                | 19面 |
| 8. 2002年度 建設交通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 32面 |

(14時05分 開議)

○委員長代理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18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第1次 財務建設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吳弼根幹事, 安載弘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安載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한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늘 기쁨이 가득하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동안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세계인

이 하나가 되는 월드컵의 개최,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제3회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참으로 중대한 대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뜻과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 대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 임오년 한해를 주민과 함께 하는 더욱더 열린 의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민의 소리에 더욱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며 민의를 충실히 들겠습니다.

다. 주민들의 어려움과 현안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구하는 의회, 경쟁력있는 의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우선의 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任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2월 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창신제6주택 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송인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景良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조례(안) 심사와 병행해서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소관 조례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

시관리국을 한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1. 2002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의 件

(14時10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간부소개는 저희 재무국에는 이번 인사이동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어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재무국 係長님들 바뀌셨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係長들은 이 자리에 다 참석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局長님! 係長님 몇 분 오신 분들이라도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秀完 財務課長입니다. 徐明一 稅務2課長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地籍課長이 회의직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구학 지출계장입니다. 박문재 지정계장입니다. 박광필 계약계장입니다. 유석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강대기 조사평가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임오년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커다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게 되는 제11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재무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하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실적, 당면 주요업무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2年度 主要業務計劃**

(財務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이 모두 재무국 소관 안전이므로 안전 질의 시에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도 병행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提出)**

(14時33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局長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구 종합행정망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각종 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1조의 3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사용”에 대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외 11종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 역시 현행 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창구 중심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전달체제로 전환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2월 5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2월 14일자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서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 처리민원에 대한 수입증지 영수제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은 신설사항 한가지하고, 개정사항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자수입증지 영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4조, 제5조의 용어 중에서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자구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기는 인증기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지금까지 개정된 경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8년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고 '94년도 6월 25일자로 인증기 도입을 위해서 1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7월 30일자 동·보건소에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 설치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3차 개정을 했고 2001년 4월 6일자 4차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 재량권을 축소하고 수수료를 다소 현실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이 다섯 번째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로구의 수입증지는 총 14종입니다. 그 다음 장에 수입증지 액면가별로 판매수수료 수입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까지 해서 2001년도에는 17종이었습니다. 조정의 조정이 돼서 14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총 수입액은 2000년도에는 13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7억 1,200만원으로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입찰참가수수료를 작년 조례 개정시에 1,000원에서 5,000원으로 현실화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인증기가 설치된 장소별 현황을 적시했습니다. 총 32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 지하철 현장민원실, 기타 동사무소까지 해서 32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가

져온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을 규정한 근거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2입니다. 1항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종류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판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한 내용의 처리민원 종류는 12종이고 본인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넣은 후 우무인을 지문창에 눌러주는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민원이 다 포함되어 있고 본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2년 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 구에서는 관련조례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라는 조례가 개정되는 2002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시 시기는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는 2002년 3월 중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처리대상민원은 행자부 고시범위 내에서 1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7종으로 하고 있고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설치 장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민원봉사실에 하나 있고 구민회관 내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종합청사 내에 하나 설치되는데 이것은 보조를 해줘서 시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종합청사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두 곳이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은 1,85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처리에 따른 준비사항을 살펴보면 기기는 전부 봉사실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민원 처리하는데 발급되는 전산입력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대상민원도

현재는 12종이지만 향후 호적 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병적증명, 납세관련 증명 등 14개 종목에 대하여도 확대시행 계획으로 있어서 대민 서비스 측면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局長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현행 종로구세감면조례에 2001년 11월 30일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는 감면사항의 관련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로구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토지세의 경감범위를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로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대상시설물은 총 14개이며, 그 중에서 10개는 종교 및 공공시설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비과세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4개의 시설은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401만 5,000원의 종합토지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01년 11월 30일 신설되어 시행중인 종로구세감면조례 제8조2항은 감면조례 제8조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감면조례 제7조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사항으로 이를 이기함이 타당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를 보호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민족적 문화재를 계승·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

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2년 2월 5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골자입니다. 개정 골자는 한가지입니다.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로 경감한다는 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의 조례형식은 제1조 목적에서 “과세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자구를 추가하고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 설치되어 있는 이 규정을 삭제해서 제7조로 이기 시행하는 그런 개정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세 50% 감면에서 과세표준 50%로 감면하는 개정이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은 과세표준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세인 경우는 상관없으나 종합토지세인 경우는 과세표준액의 합산제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재산이 있을 경우는 누진을 적용으로 해서 세액 산출에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 50% 경감규정을 과세표준액 50% 경감규정으로 개정을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대주택 감면조항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본 규정을 지정문화재 감면규정인 제7조로 이전코자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표준

과 세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합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율은 지방세법 제23조의 16에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기타 50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1000분의 50으로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세 경감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가 유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구의 감면대상 재산현황입니다. 14건인데 그 중에 10건은 종교시설로서 비과세 대상이고 4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종합토지세 5,025만 2,000원, 재산세 387만 8,000원을 과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50% 감면에서 과표 50%로 감면할 경우에 경감규모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묘동 56번지 단성사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세 50%로 경감할 경우에는 1,113만 4,740원이 경감됩니다마는 과표 50%로 경감할 경우에는 1,266만 8,440원이 경감이 돼서 11.3% 정도의 경감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로1가 25번지 거기에 약 11.6%, 원서동 219번지는 12.2%, 청진동 20번지는 약 12.5%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제도를 하기 때문에 경감규모가 좀 차등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번 조례개정으로서 우리 구의 구세는 약 400만원 정도의 세 경감이 추가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례상 세 감면을 규정할 때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의 허가사항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허가는 2001년 12월 12일자 세정 13415-1302호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 자구를 보완하고 감면규정의 불합리를 개정하며 감면규정의 조문을 제8조에서 제7조로 이

동시키는 보완적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 제2항, 제3항 안건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劉燦鍾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董連浩 財務局長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사육하고 청일여관이 예시되는데 어디 문화재 부속토지로 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하시면 그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예, 그렇게 하세요.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1課長 趙朝翼입니다. 劉燦鍾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등록문화재로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작년 연말쯤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진흥과에서 등록문화재로 예상되는 건물 14군데를 문화진흥과에서 시에 문화재과장 앞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현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하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관리국 문화진흥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이 14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劉燦鍾委員님께서 공간사육과 청일여관이 어느 문화재에 부속된 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공간사육과 청일여관 그 자체가 향후에 문화재로 등록될 그 대상이라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문화진흥과에서 검토해 가

지고 시로 올린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劉燦鍾委員 우리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일여관이라든가 공간사육에 대해서 문화재 대상으로 적합한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국에서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올라온 거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이어서

○稅務1課長 趙朝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42조4항에 보면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의 형태로서 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등록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가치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해서 파악을 해서 시로 보고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별도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될 겁니다.

○劉燦鍾委員 구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구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당직원이 가서 이것이 문화재 대상으로 등록에 적합하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공간사육, 청일여관 그러면 청일여관이 쉽게 보면 역사성이라든가 정말 문화재로서 등록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경감 50% 규모를 시키겠다 이렇게 부속토지로 되어 있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안하셨는데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해 50%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토지가 아니라 문화재 대상 건물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문화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문화재가 속해있는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문화재가 몇번지의 청일여관, 몇번지의 문화재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거기에서 부속토지는 뭐예요? 그 동일번지 내에서 지정하면 되는 거지 부속토지 하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렇죠? 청진동 청일여관에 100번지다 하면 100번지 내 문화재 하면 되는데 100번지 내 부속토지, 101번지, 102번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구 문화재심의위원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서울시에서 문화재 대상이 될 시설물을 올려라 해서 문화진흥과에서 올려 가지고 문화재 대상이 된다 해서 이것을 다시, 왜 이러한 것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부연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稅務1課長 趙朝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과인 문화진흥과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파악해서 보고할 때는 나름대로 그러한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건건마다 부수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았습시다하는 주관과에서 올릴 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에서 시에 보고한 것이고 시에서는 거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에서 올린 문화재가 타당한가 이것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劉燦鍾委員님께서 원하신다면 관계과에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지금 재무과 소관은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문화재 대상 심의 그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구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문화재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올려라 해서 했다면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劉燦鍾委員 길어지니까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재로 올리게 된 과정

○財務局長 董連浩 잠시 후에 문화진흥과의 과장이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날로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들어 첫번째 의회가 열린 날입니다. 재무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관계없이 우리 동네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60%이상 신축이 되었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舊 청사를 어떻게 이용을 하실는지, 우리 동네 동사무소 말입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활용계획의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福同委員 행정관리국에 물기로 하고 지난해 2001년도에 종로구청의 세금 못 받아들인 거 채납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결손처리한 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결손처리도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金福同委員 연말에 보니까 결손할 수 있는 2000년도부터 내려와 있는

○財務局長 董連浩 결손처리가 업무보고 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2,053건에 49억 100만원을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 29쪽 맨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세, 시세, 구세를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국세로 걷어가는 것이 얼마고, 시세로 걷어가는 것이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우리 관내에서 징수하는 국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의 경우에는 12월말 현재 3,134억 7,100만원이 시세가 되었고 구세는 443억 2,900만원이 저희 관내에서 징수되는 구세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구세가 시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우리 구세에 분류된 세목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金福同委員 우리가 공사를 하기로 지정한 곳은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1,000만원이 공시지가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800만원 정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특정한 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일제 하향한다든지 상승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금 지칭을 하신 지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특성을

○金福同委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면 우리 종로5·6가 관내에 대학로에서 충신동간에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해서 고건시장께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20억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한 사람 땅 소유주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97년도에 그 사람이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받았을 적에 약 1,0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요즘에 와서 공시지가를 때보면 약 800만원으로 줄어 있어요. 그것이 도로계획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아닐 거고 방금 말씀하신 지번에 대해서 지번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별도로 경로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로간 충신시장간 도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

○金福同委員 이어서 현재 부동산중개법을 보면

중개인 아니고 부동산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몇명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보조원어요? 중개인사무소에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얼마든지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개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아니죠. 단순히 보조업무만 하고 중개인으로서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재 부동산을 상세하게 점검하십시오. 부동산중개인이 아니면서도 중개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무더기 숫자로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고 공인중개사고 간에 공인중개사는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보지만 중개인은 허다 비워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중개인 행세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일이 많습시다. 이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몇년전만 해도 당시 심사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불만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맹지가 있어요. 몇 백평의 땅에 도로가 전혀 없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건축도 안되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그 지수가 만약에 신영동 100번지에서 그전에는 150m 이내에는 공시지가 기준점이라고 하나 그거 뭐라고 해요?

○財務局長 董連浩 표준지라고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표준지 가격이 150m 이내에는 다 적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공시지가 심의위원들

이 그런걸 자전거길이나 소로길이 있을 때는, 지금 45년 전부터 이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기관이 있으니까, 통보가 오니까 그걸 하고 그러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공시지가 심의위원들이 언제부터 없어지고 또 안 되는지 그런 맹지가 몇 개는 아마 표준지에서 150m 이것보다도 그런 어려운 맹지 같은 데는 봐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나 이런 거를 50%씩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저희 세검정 지역의 문화재도 굉장히 많은데 보수나 이런 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그냥 팽개쳐두고 있거든. 말로만 문화재지 아까 전부 폐허가 되어 버리고 못쓰게 됐거든. 그래서 이런 감면조례보다는 그런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財務局長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좀 참작하시고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진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공시지가심의를 위해서 동의 심의위원회가 왜 없어졌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의 위원회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玄壽漢委員 몇년도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한 45년 전쯤으로 생각합니다. 동심의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토지의 경우에 그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조사가 잘 못돼 가지고 공시지가가 특성에 맞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할 때 표준지 주위에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특성 이를테면 도로에 접해 있느냐, 접해있지 않느냐, 또 몇m 도로인가, 맹지나 맹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

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맹지로 판단되면 그것은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지가조사 문제는 어느 특정한 필지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토지를 말씀하신다면 개별적으로 그 특성에 맞도록 특별한 사유를, 지가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맹지의 소로길도 없고 도로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소유 땅으로 쓰여왔는데 건축허가나 매매나 이런 게 전혀 안되고 표준지 때문에 매년 재산세 부과된 게 10~12년 되니까 땅값 재산세로 내고 끝나버리는 데가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산세에서 몇% 감면해주면 2~3년 있다가 호지부지되어 버리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무슨 개선책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재산세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시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가조사를 해서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맹지에 대해서는 비단 부담뿐이나 그 일대만 있는 게 아니고 맹지가 저희 관내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맹지 특성을 고려해서 지가산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12종류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4개는 언제쯤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시행시기는 지금 저희가 아직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吳錦南委員 온라인 이런 것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 준비과정 때문에 지금 당장 같이 시행을 못하고 향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劉燦鍾委員님이 7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2항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라고 그러니까 문화재가 깔고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글귀로 보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될 것 같아서 문구를 문화재에 따른 그 부속 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방금 吳錦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서 정한 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이미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문화재라고 일컬어지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 문화재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부속한 토지라고 그러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2001년도 우리 종로구 총예산이 1,518억 8,000만원 정도되지요? 그런데 우리 盧張鐸 區廳長代行께서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구민회관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모 좌석에서도 2천 몇 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고에서 직접적으로 구에 지원이 돼서 여기에 삽입이 안된 예산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직터널 보수를 했는데 별도로 여기에 다른 루트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저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2,000억 이상을 상회하는 우리 구예산 규모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구로 배정된 예산규모 이외에 시에서 직접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관내에서 이뤄진 각종 공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예산에 포함은

안됐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런 공사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별도로 어떤 예산의 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구에 내려온 건 吳錦南委員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준이 정확한 통계이고 2,000억이 넘는 예산의 규모는 그것하고 좀 맥락이 다른 규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그 지역의 어느 분은 저한테 물어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는데 권한대행 하시는 분은 2,0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답변하기가 난감했거든요.

○財務局長 董連浩 시에서 우리 관내의 공사를,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공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吳錦南委員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년도니까 작년도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별도의 장으로 해서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새해 목표액이 물론 지난 연말에 2002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번 걸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6억 1,000만원인데 목표액이 21억 4,900만원으로 약 5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외 수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21억 4,000만원을 금년 목표로 삼아서 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목표액이 5억 정도 감소된 것은 재산매각대금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해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만 작게 책정한 목표로도 금년예산을 운영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23쪽 200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2002년도에 구세 과년도 체납이 8억 2,0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30억 얼마가 체납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8억 2,000만원을 목표로 세웠는지

○財務局長 董連浩 과년도 구세의 체납 경우에는 지난해 7억 7,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만 약 14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187%의 징수 실적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한 유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체납된 구세를 지난해 연말에 즈음해서 약 7억 정도를 별도로 납부했기 때문에 갑자기 구 체납징수 실적이 높아진 것이고 지난해 7억 7,000만원보다도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것보다 약간 상회한 8억 2,0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로, 금년도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는 7억 7,000이고 8억 2,000에서 체납 목표를 더 세웠지만 우리 구세 체납액이 약 3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목표를 세우는데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정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현재 저희 구세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은 39억 8,7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왜 목표액을 8억 2,000만 잡았느냐 하는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직한 우리 구정업무추진의 양상이라면 체납이 된 구세를 100% 전부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체납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을 못 넘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과거 4~5년 동안의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도 이런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과년도 체납액 39억을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달성해서 많이 거둬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아까 玄壽漢委員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표준지가가 일정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표준지라고 하면 그 인근에서 이의신청을 많

더라도 표준지가가 상향할 때는 상향을 시켜야 하는데 표준지 내에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상향을 하고 이의신청 않는 것은 표준지가가 안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를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이 지역은 지가가 조금 상승해야 되겠다, 이 지역은 조금 낮아야겠다 해야지 낮아야 될 데가 높은 데가 있고 높아야 될 데가 낮은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표준지가를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고 해결야만 주민간에 큰 불화가 없지 어느 지역은 재건축을 한다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표준지가가 엄청나게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2년도 표준지가를 조사할 때는 그 지역에 맞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다음 45쪽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 단속 및 결격사유 일제정비라고 했는데 그런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볼 때 단속이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하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계수수료가 1억 미만인 경우는 0.4%가 되고 1억 이상인 경우 0.3%인가 뭐 그렇게 소개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 요율은 맞는 요율입니다만 거래되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미만은 0.4%이고 1억 이상은 0.3%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이 부당 징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장에 나간다 해도 그것을 적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財務局長 董連浩 솔직히 말씀드려서 丁炳煥委員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적발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거래하는 장소마다 입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丁炳煥委員 현실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봤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부당하게 징수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개정(안) 중 蔣昭秀 專門委員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개정조례(안)에서 한장을 넘기시면 수입증지발행액면가 1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종이 가령 증지대가 10~1만원까지 있는데 직인 하나가 10~1만원까지 찍힐 수는 없습니까? 무슨 뜻이나 하면 수입증지를 발급받으면 그 민원서류에 따라서 10원짜리도 있고 2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증기 하나 가지고 10원짜리도 발급할 수 있고 20원짜리도 발급할 수 있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수입증지를 따로 사서 민원서류에 붙일 경우에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등 필요한 액수만큼 붙여야 되지만 인증기를 통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인증처리가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무인발급기도 말하자면 민원서류에 따라서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으로 1만원짜리도 찍혀 나오고 10원짜리도 찍혀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아까 전문위원이 이거 1대에 1,800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럼 吳錦南委員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월중에는 전부 도입할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3월 중순경에는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단성사, 대한교육연합회관 본관사옥, 청일여관 이 부근의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죠?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화진흥과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켰습니다.

○**李炯述委員** 바로 똑같은 얘기가 우리 재무건설 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룰 때 담당과장을 참석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왔거든. 담당과장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럴 때에는 담당과장이 꼭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전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오늘 반복된 겁니다. 이중에 단성사라는 건물을 지금 헐고 곧 지으려고 건축허가심의를 넣어놨죠?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를 해주신다면 文化振興課長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니 이게 구청에서 과마다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만약 단성사 건축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재산세 감면을 하겠다고 이게 올라오면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지정하고 과세하는 부서하고 따로 논다는 지적인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할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만약에 단성사를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이 감면조례를 올렸다고 그러면 이 건 일토탕토않은 얘기지.

○**財務局長 董連浩** 그러니까 향후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단성사를 당장 감면대상으로 삼겠다 하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李炯述委員** 아니 헐고 새로 짓겠다고 구청에 올려놨을 것 같으면 이 단성사란 자체가 올라오지를 말아야지. 지금 현재 신축하겠다고 접수되어 있을 것 같으면 올리지를 말아야지 왜 여기에다 올려놨느냐 이거예요. 안맞지요. 신축하겠다고 건축심의를 올려놨을 것 같으면 여기에 단성사란

이름이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李炯述委員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저희 구에서 등록문화재로 예상이 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문화진흥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던가 시에서 지정하던가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렇게 두가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28일날 문화재보호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란게 생겼어요. 종전에는 문화재지정제도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었고 시지정문화재가 있었는데 그게 문화재보호법이 3월 28일 제정되면서 문화재등록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정제도보다 약한 것인데 예를 들면 5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자꾸 건물들이 사라져가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걸 등록하자 해서 등록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50년 이상된 근대건물들이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어떤 등록제도로 묶어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6월달에 공포가 되고 7월달에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우리 구청 가옥대장 50년 이상된 건물 중에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게 없나 해서 우리 관내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시에다 보고한 14건 그겁니다. 아직 이 건 등록된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청일여관하고 경기여고 본관 현재 정독도서관입니다. 그 2개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2개만 내려왔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걸로 되어있고 계속해서 이런 건물들이 수시로 올라갑니다.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면 문화재 전문심의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답을 듣고 싶은 얘기고 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 왜냐하면 단성사가 지금 헐고 새로 짓겠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접수되어 있으면 단성사 자체를 올리지 말아야지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때 당시에

○李炯述委員 그 당시에 아니라 지금 올라온 것이 단성사가 새로 건물 짓겠다고 한 것을 세금 감면해주겠다고 올라와 가지고 통과시키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李炯述委員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소를 여기다 예시를 해서 향후에 이 14개소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의거해서 감면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올렸다고 해서 감면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단성사의 경우에는 이미 건물을 헐고 형체가 없는 것을 감면하겠다고 여기다 올려놨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것은 자료는 과거에 문화진흥과에서 조사를 해서 시청에다 올렸던 그 자료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단성사는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 될 것을 자료에 올렸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설령 자료를 올렸다 하더라도 자료 올린 자체를 감면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료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등록이 완료된 그러한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에 여기 14건 문화재로 가치가 있겠다 해서 서울시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 내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구 단위는 없습니다. 시하고 국가에만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여기에 14곳을 서울시에 올릴 때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올렸다고 그랬죠?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종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도 종로라고 하는 간판은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재가 거의 다 종로에 있거든요. 그러면 종로 집행부가 귀중한 소중한 문화재를 발굴할 것 같으면 대학교수들을 위원회를 설치 못하더라도 종로구청 안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것 해가지고 그 많은 속에 자문기구를 하다 뒤 가지고 진짜 들어가야 될 문화재 이런 부분이 아는 것도 빠졌습니다. 먼저 이 장소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윤보선 대통령 집 앞에 3·1운동 우리 이 나라를 건진 귀중한 건물이 있거든.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그 책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나라를 찾은 건물인데도 이러한 것은 하나 종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구청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그저 형식으로 각 동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 저것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 참되고 옳은 것을 찾아내 가지고 헐려 나가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 무슨 형식적으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 아마 우리 위원들이 봐 가지고 과연 문화재라고 느낀 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참되고 정말 문화재로 값어치 있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헐려 나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건물을 서울시에 올려서 이것을 올릴 적에 여기 적어도 집행부 종로구청은 서울시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재산도 서울시보다도 종로구 재산인데 여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담당 부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다만 저희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튼튼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과정이 좀 李炯述委員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동에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된 적도 있고 문화재 지정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발굴되

면 올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동뿐이 아니고 관내 오래된 토박이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즉시 즉시 저희들이 보고가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여기 위원들이 수없이 얘기해도 일단 회의가 끝나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지 않습니다.

○李炯述委員 과장님 바뀌면 또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종로구가 계속 나가 가지고는 종로구민에게 큰 보탬이 안됩니다. 2002년 금년부터는 정말 마음을 굳게 다지고 종로가 제일 세워야 될 부분이 600년 전통 참 귀중한 소중한 자료를 찾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고맙습니다. 李炯述委員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여튼 우리 문화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어떤 제도적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劉燦鍾委員님! 문화진흥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죠.

○劉燦鍾委員 문화진흥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공간사육하고 청일여관하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넣기 전에 안을 잡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동에 문화재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문화재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해야 될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 것 같고 좀더 광범위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대상 선정은 잘못됐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문화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劉燦鍾委員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등록문화재가 작년에 문화재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채 1년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관내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그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50년 이상 되고 어떤 보존해야 되겠다는 근대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재조사를 해서 또 누락된 건물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상정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劉燦鍾委員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금 혼동이 되는 이유가 이래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단성사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돼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만약에 등록이 취소되면 소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당연한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2001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현황에는 나와있으니까 이미 단성사나 4개의 건물이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재산세는 제외하더라도.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대상 건물로 조사된 거지 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安載弘 전문위원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이것은 감면할 경우에 세수 감소 얼마 되느냐 위원님들 현황 참고자료로 파악하라는 의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자료입니다. 안건에는 세 50% 감면에서 과표 50% 감면 그것만 핵심이지 문화재하고는 핵심하고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세 50% 감면할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과세표준

액 50%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경감이 된다 이렇게 경감규모가 달라짐으로서 이러한 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보시라고 한 거지 이것을 조례안)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전문위원도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것 보면 부과현황이지 이게 저기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말씀해보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혼동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달라고 자료를 시청에다 저희가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건은 이미 종교시설로서 감면대상이 되고 나머지 4건이 향후에 문화재로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 이 시점에서 이 4건을 감면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방금 청일여관하고 공간사옥에 대해서 제의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감면대상에서 제의를 하자 제의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문화재로 등록이 안될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문화재는 감면대상으로 삼고 어떤 문화재는 감면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을 감면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시청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보고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시청에서 등록했을 경우에만 이것을 감면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가지 이 자리에서는 어느 것을 감면대상으로 삼고 안 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委員長 安載弘 정리가 됐어요. 자꾸 혼동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혼동이 오니까 그렇게 질의가 나오는 것 같고 뭔가 혼동이 되겠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간사옥하고 청일여관을 왜 감

면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시청에다 이걸 보고를 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라도 청일여관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구청 입장에서 판단이 서서 이것을 향후에 등록문화재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시로 청일여관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劉燦鍾委員 여기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하는데 자료 하나도 없고 청일여관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가지는 절차가 틀린 거예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 시 문화재위원회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라 그 공문을 내려보내라고 그래요. 구태여 그 내용 거치지 않고 무슨 우리 종로구청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요? 말이 안맞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시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감면대상을 삼을 수 있는 등록문화재를 지정을 하는 그 업무는 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피동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좀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시에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쉽게 보면 적합하지 않다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다 해서 우리 종로에서 상정 안할 수가 있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건 아닙니다.

○劉燦鍾委員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라?

○財務局長 董連浩 문화재를 등록을 해놨으면 거기에 등록을 해라, 못해라 그 얘기를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얘지요.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례상 소위 문화재로 등록된 대상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감면하자는 의미니까 등록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

이 시에 있고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대상문화재로 올려준다는 얘기가 논란을 정리하자고요, 劉燦鍾委員님! 문화진흥과장님! 오신 김에 李炯述委員님 말씀대로 구 내에 대상문화재가 있다면 추가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아가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정리 및 관리강화 해가지고 1년 내내 3월부터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는 금년도에는 매각대상 토지가 없어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적환장이나 주차장 기타 소위 도시계획상 용도로 지정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20년이상 길게는 25년이상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공유재산 정리 및 관리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재산들을 조사해서 그것이 매각대상이 될 수 있다면 매각을 하고 임대 가능하다면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창동 같은 경우도 10여 필지가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요. 구거부지도 쓸만한 구거부지, 적환장, 주차장 등 여러 용도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조사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매각을 할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방금 별도 도시계획으로 용도가 지정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대상토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향후에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재정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한 토지들을 제가 볼 때는 사실 국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힘든 일이면 위원님들이 그런 땅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조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치밀하게 구거부지가 됐든 지금 말씀드린 적환장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치밀하게 조사해서 매각대상 토지다 소위 대부대상 토지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 불필요한 토지는 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예, 맞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리고 구 금고 약정기간이 5년 8개월로 된 것은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우리 금고의 계약 당사자는 우리 구청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한빛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5년이 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해서 구에 이익이 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우리가 예치한 정기예금의 경우에 타 시중은행보다도 조금 더 높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0.2% 그렇습니까? 더 받는다고?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5년8개월은 시 금고가 한빛은

행이니까 그 금고와 소위 약정기간을 동일하게 해야만 온라인시스템이 가동하나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도 물론 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특정은행을 계속해서 약정은행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우리나라에 한빛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재라인 시스템이 그 은행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실세금리에 +0.2%만 적용받으면서 한빛은행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좀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금융기관도 소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구에서는 고려해서 왜 꼭 한빛은행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너네랑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배짱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의 차등적인 월등한 대우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한빛은행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좋은 지적이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점을 잘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서 금융기관 구금고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6時00分 會議中止)

(16時07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02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報告의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항상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는 없습니다만 새해 인사도 드릴겸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宣圭景 住宅課長입니다.

李廷花 都市計劃課長입니다.

李漢求 建築課長입니다.

俞樂濬 公園綠地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2年度 主要業務計劃**

(都市管理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5항~7항의 도시관리국 안전심사와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昌信第6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및事業計劃決定(案) 區議會 意見聽取(案)**

**6. 崇仁第3住宅再開發區域變更指定(案) 區議會 意見聽取(案)**

**7.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16時37分)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승인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02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창신6구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 그리고 승인3주택재개발변경지정(안), 마지막으로 평창동 148-16일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신제6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제6구역은 청계로변에 위치한 창신동 400-4번지 일대 16,464.7㎡ 약 4,982평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청계로변의 삼일아파트 6개동과 후면부의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은 '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삼일아파트와 후면부의 상가지역 간의 상이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추진의 사가 미진한 후면부를 구역에서 해제하고 삼일아파트가 위치한 부분만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개발구역 면적이 현재 16,464.7㎡에서 6,060.3㎡로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사업계획안을 보면 현재의 아파트 삼일시민아파트 1동부터 6동이 되겠습니다. 6개동을 철거하고 18층 아파트 3개동 210세대, 20층 오피스텔 1개동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개발구역 면적 축소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승인제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곳은 역시 '84년 11월 17일 건설부고시 제469호로 재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96년 6월 29일자로 서울시고시 제173호로 삼일아파트 7동부터 12동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제결정 고시 후 2년 이내에 원래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형도면고시가 늦어진 관계로 '98년 6월 29일자로 도시계획 내용이 사실상 실효가 되었습니다.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체척하겠다는 내용이 실효가 돼서 사실 지금 현재는 해제부분이 재개발구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구역면적은 24,087㎡이고 해제하는 부분은 삼일아파트 7동부터 12동 일대 4,810.3㎡로서 잔여 재개발구역 면적은 19,276.7㎡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창신6구역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후면부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후면부를 해제하고 아파트 부분을 재

파트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후면부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후면부를 해제하고 아파트 부분을 재개발구역으로 존치하자는 계획이고 지금 승인구역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에 후면부의 상가와 주택은 존치를 시키고 아파트 부분은 승인아파트 7동부터 12동 부분은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시키는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 148-16 일대 자동차정류장 부지 7,736㎡ 중 6,949㎡를 해제하는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에 대한 건입니다. 이곳은 '7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78호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사용하여 오던 유성운수에서 별도의 차고지를 상암동에 확보함으로써 사유지인 본 도시계획시설의 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민원을 제기하여 온 곳입니다. 당초 부지 전체인 7,736㎡를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작년 6월 13일 구의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청취를 거쳐 7월 28일 서울시에 해제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도원교통에서 매입의견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검토와 함께 차고지용도가 불필요하여 해제하는 경우 공공기여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원교통의 의견을 재조리한 결과 일부 토지인 148-7 664㎡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용 또는 토지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필요하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인접한 시·구유지 123㎡를 합한 787㎡를 자동차정류장으로 존치하고자 하며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타 공공시설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자동차정류장에서 해제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제부분 6,949㎡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 중 평창동 148-9 일대 880㎡는 현재 자연경관지구로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중별 구분하고 평창동 148-16번지 일대는 현재 18m 최고고도지구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지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 건 역시 금년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參照)

**昌信第6住宅 再開發區域 變更指定 및 事業計劃決定(案)**

**崇仁第3住宅再開發區域 變更指定(案)**

**都市計劃 變更決定(案)**

(鐘路區廳長)

(이상 3건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2시에 시작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루하시고 불편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질문하시고 심도있게 토의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할 일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개의치 마시고 최대한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金福同委員입니다. 현재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운아파트를 철거하고 공원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거기가 몇평이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약 28,000㎡ 정도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상당히 큰 광대한 평수네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민선 구청장께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많이 애쓰셨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화동 고지대의 시민아파트를 외부로 다 내보냈습니다. 공원화사업을 800억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운아파트에다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돌아오는 종로가 아니라 자꾸 내쫓는 종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돌아오는 종로라는 개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구에 관계없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만드는 것도 돌아오는 종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주거여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는 녹지량이 풍부하고 공원이 많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 청운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뒤에 공원이 넓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산도 있고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을 더욱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주택단지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주택단지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

민들 중에서 일부는 거기에 재건축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가 그 부지의 소유권 자체가 거의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국유관리청인 경찰청이나 재무부에서 매각의사가 없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다시금 묻겠습니다. 승인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승인이 떨어졌죠? 거기에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몇%나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승인4구역에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접수된 공식적인 문서에 근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67% 정도의 주민은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주민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일단은 반대거나 또는 소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우리 동네도 재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결사반대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대립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하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두다 주민들에게 소중한 재산가치를 높이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그러나 그 의견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찬

성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그 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에 서거나 또는 찬성하는 분의 입장에 서서 한편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든 추진하지 않든 그 의견을 결정하는 문제는 주민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결국 저희들은 법에서 정해져있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승인동 들어가는 입구에 롯데캐슬이라고 아파트가 생기고 있죠?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몇 세대나 살 계획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제가 정확한 세대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유인물보다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우리 종로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가 600년이 훨씬 넘는 도시 속에 중앙지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종로구에는 나름대로 주거개선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로구에 엄청난 불법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출신지역 5·6가 지역같은 지역은 엄청나게 아주 항공촬영에 적출된 곳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 2평, 3평짜리는 엄청나게 이렇게 구청에서 조치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들어서서 '99년에 구청장과 질의 답변에 2평미만, 3평미만은 묻지 않겠다고 봐주겠다고 답변도 들은 일이 있고 지금도 어김없이 조금 장독대를 고쳤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되면 다 없어지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99년도에 구청장 답변과 똑같이 불문에 부칠 수는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역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불법무허가 건물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정말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비록 그 사정이 이해된다고 해서 불법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현실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참작해서 정말 소규모 생계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애정은 피도 눈물도 없이 엄청나게 없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대단하게 큰 마음으로 크게 봐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우리 공원녹지와 소관인데요 종로구에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하고 나무도 많이 식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편인데 녹지를 가꾸고 심는 것도 좋습시다. 마는 추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랬습시다. 마는 대학로 주변에 가로수 밑에 쥐똥나무라고 죽 심었는데 국장님 가서 보시면 밟혀서 다 죽고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그루에 6,000원짜리를 싹 심어놓고 그랬는데 추후 관리가 없어 가지고 가뭄에 말라죽고 밟히고 이래서 우리 구의 구민의 혈세를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무리 관리를 많이 하더라도 워낙 인파가 많습니다. 밟히고 집회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하더라도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바에는 거기에 있는 밑에 관목류들을 제거해버리고 잔디를 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보도블록을 덮게 되면 경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종로 대로변 국민은행 본점 앞에 그 주위에도 그렇고 나무가 그때 당시에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돈을 '99년도에 집행했는데 현재 단 1,000만원 어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로5가 대학로 주변에 기독교방송에서부터 또 이대부속병원 옆에 울곡로 주변에 이러한 데취뽕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우거졌습니다. 우거져 가지고 전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나무에서 벌레들이 발생되고 여름에는 초봄에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데 금년초에 그곳에 전지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특히 관목류에서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목류는 예쁘게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에 대해서는 수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전지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전지를 해놓으면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수형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전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늘어선 가지나 이러한 것은 제거를 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신 쥐뽕나무는 깨끗하게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옷자란 나무를 완전히 전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화예식장 주위를 보면 거기에서 대학로에서 5가쪽으로 우측으로 보

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가로수 나무가 약 35도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지나다니는 차, 버스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부딪쳐서 사람이 다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대로 보게 되면 4그루 정도만 증장비로 밀어서 세워도 되겠고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종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버스 승객들이 다 눈 찌푸리고 이런 곳이 있는냐고 이럴 정도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셔서 이화예식장 주변에 우측쪽에서 대학로에서 5가쪽으로 오면서 우측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버스가 사람들이 서둘고 보지 않으면 부딪혀요.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에서 만약 커다란 피해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세우든가 자르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하셔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내일 당장 저희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하루종일이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조금 이따가 또 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업무계획 22쪽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부분 이 세분화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종로만 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李炯述委員** 이거는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李炯述委員**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했을 때 국장님 설명 도중에 주민들 재산상의 많은 폭의

차이가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저층주택이라는 것은 몇층까지 저층주택으로 볼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4층이하입니다.

○李炯述委員 중층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7층 또는 12층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나머지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3층은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저층주택은 4층이상은 되지 않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세분화하는 부분을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 가지고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답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주민들이 잘 이해가 안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3종을 나누는 그 근거자료를 한번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서울시에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과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리라고 보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 사안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조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세분화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 시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신축할 때에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집을 짓겠다고 접수를 하죠? 답은 건축과장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李漢九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것은 법에 근거해 가지고 합법하면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죠?

○建築課長 李漢九 예,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봅시다. 우리 북촌지역에 건축하겠다고 신축허가를 넣으면 도대체 무슨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줍니까? 또 허가를 해준 집도 집을 건축하는 도중에 공사를 못하도록 종로구청에서 제재하는 이유가 됩니까? 답을 좀 주십시오.

○建築課長 李漢九 북촌지역에 한옥보존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그쪽 환경을 좋게 하고 한옥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는 한옥수선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용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李炯述委員 그거하고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建築課長 李漢九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李炯述委員 그러면 집행부 종로구청은 현행법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어떻게 법에 근거도 없이 허가를 안해주고 그러니까? 그 답을 해주세요.

○建築課長 李漢九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한옥 밀집지역에 거기에서 건축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李炯述委員 과장님! 본 위원이 서울시 현 고건 시장하고 대화 중에 어떤 일이 있든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경우에 절대로 규제하지 않겠다 지원하는 거 하고 규제하는 거는 별개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겠다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음까지 해놨거든. 시장이 각 국장들, 국·과장들 앞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부분은 절대로 규제를 하지 않겠다 그 답을 했습니다. 그 답을 했으면 현행 법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 법대로 당연히 종로구청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죠?

○建築課長 李漢九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안내주는 이유가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九 시장 지시로 2001년 12월 15일부터 북촌지역의 건축허가 사전협의회라고 해

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종로구청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어떻게 시장 지시가 법에 우선합니까? 그렇죠? 시장지시가 법에 우선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서울시 조례로 한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九 행정지시로

○李炯述委員 행정지시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애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에서,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 만약에 한옥을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한옥환경이 전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李炯述委員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옥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입니다. 한옥 밀집지역 안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 나름대로 궁색한 답변이 될 수 있을망정 이건 한옥이 밀집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구청에서는 서울시다,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청이다. 이렇게 핑퐁을 치면 지역주민들은 무척 고통을 받습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내용을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 친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고통을 주면 이걸 친절이 아니거든. 분명히 건축과장님은 서울시장이 지시해준 것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법에 근거없이 서울시장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법에 근거없는 저거를 집행한다고 하면 집행부인 종로구청은 서울시에다 분명히 항의를 해서 현행법으로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거를 행정지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서울시장에게 건의해 올린 게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1월 22일날 구역을 축소해 주든지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허가가 불가 처분된 거는 지금 3건인데 그게

대부분이 한옥 밀집지역에 되어있는 것이 지금 계류중인 게 2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한옥 밀집지역은 가회동 31번지, 11번지, 화동 35번지 이 외에는 군데군데 한옥이 있지 그 이외에는 가회동에는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의 한옥들은 보통 70~80년 됐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李漢求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까지 주민들이 한옥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온 그 곳에 수리를 하려고 들어가봤더니 종로구청 건물대장에 있는 평수하고 실질평수가 거의 다 틀립니다. 80~90년 흘러온 저거는 관례로 묵인해 온 겁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종로구청이 현재 있는 평수하고 건물대장에 있는 평수하고 틀리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억압을 주는 행정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답을 주시죠. 80~90년 동안 재산세고 가옥세고 받아오던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동네 잘 가꿔서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수리에 들어가는 과정에 옆집에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걸 빙자해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종로구청이 정말 복춘을 잘 가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을 해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당연히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법대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불법을 묵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이 되어 있는 면적이 공부상보다 조금 늘어나 있는 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70~8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다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있는 면적을 초과해서 짓는 건 그건 욕심이 좀 과하다고 보여질

니다.

○李炯述委員 그건 안 되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런 분들이 한 두분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옛날에 살던 범위 내로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현실을 인정해서 운용의 묘를 살리되 현재의 면적을 더 늘려서 지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그건 당연하지요. 80~90년을 그대로 손 안대고 넘어가던 집이 한옥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용자를 해줘서 수리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 이웃집에서 저 집은 왜 평수가 안맞나 해 가지고 구청에다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 가지고 이웃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실측을 해봤더니 건물대장의 평수하고 실제의 평수하고 안맞다고 하면 그러면 복촌을 잘 가꾸겠다는 서울시 정책을 완전히 종로구청이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李漢求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炯述委員 그러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옥을 뼈대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수만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옥을 다 철거하고 기초도 철근 콘크리트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 위에도 30m가 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건물보다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3개의 행정지시가 나간 게 하나는 남의 대지를 침범해서 침차가 침범했고 하나는 지하실을 파냈고 또 하나는 처마 밑에가 우리한테 등록 신고한 거와 다릅니다. 처마 밑에다 6㎡가 더 늘어났고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지의 행정지시를 내린 거지 일방적으로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한옥을 수리하겠다는 등록을 신청한 게 120여 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집들이

수리를 할 때 현재 있는 상태대로 수리할 때 종로구청 집행부가 무슨 규제를 하거나 그런 건 없겠죠?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건축주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양성화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전부 양성화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안 받은 게 건축주의 불찰이고 그때 받았으면 전체가 다 양성화돼서 공부상에 다 올라갔을텐데

○李炯述委員 課長님! 복촌은 분명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작품을 제대로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얘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복촌을 가꿀 수 없습니다. 왜 못 가꾸느냐? 이걸 서울시와 보조를 해가지고 제대로 가꾸겠다고, 서울시가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이웃의 고약한 주민이 이 집은 어느 부분이 위법한 부분이 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 전 옆에 다소 손을 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그때에 왜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괜히 좋은 지역 가꾸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의 불법건축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걸 서울시 정책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는 완전히 손발이 따로 노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대로 한옥 보존과 복촌 살리기라고 하는 데에는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옳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다소 현실과 분리되는 그런 법령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맞지 않는 사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그렇게 탄력적인 법적용을 받거나 현실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많은 한옥들이 대수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과욕을 부

리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과  
육을 조금 자체를 해주셔야 다른 한육을 가진 분  
들이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축을 허가하는 부분 중에서 당연히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이라고 하는 큰 틀 때문에 다소 법을 탄력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되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만 한육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  
다.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허가를 할 수 있도  
록 방침을 받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두번째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하  
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육 밀집지역 안에서도  
현재의 법으로는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보  
면 허가를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  
한민국 백성이 왜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에 규제  
를 받아야 합니까? 이 부분을 고건 시장이 분명  
히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서서히 바뀌어 나갔거든. 이런 부분은 집행부인  
종로구청은 종로구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  
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육 밀집지역의 건축  
을 불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격을 주  
고 시에서 즉시 절충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허가  
를 해주든지 하는 하나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법에 근거가 없는 걸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인 종로구청에 있는 거예  
요. 아무리 서울시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집  
행부인 종로구청이 분명히 서울시장하고 답판을  
짓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제발 하지마라 당부를 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

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제7항 도시계  
획변경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인데 이거 평창  
동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건  
슬라이드를 켜주시고 평창동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148-16 일대 현재 고도가 18m 5층인데 이거  
일반 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북악터널에서  
그 앞까지 내려오는 게 18m고도로 제한되어 있지  
요. 더 이상은 안되고. 그럼 그 전에 삼성아파트  
나 롯데아파트는 16층, 14층 올라가 있는 상태에  
서 짓고 난 다음에 고도가 지정된 겁니까? 길  
건너 이런 데는 용도를 풀어주면서 7층 이하로 한  
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길 건너는 재건축이  
들어왔는데도 5층으로 묶였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구의원으로서 한심하고 난  
찬성도 못 하고. 이건 재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먼저 말씀드리면 7층 이  
거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용도지역을 결정  
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방  
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6월까  
지 반드시 종을 1종~3종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  
우 종별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이 됐  
든 2종이 됐든 3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2  
종으로 구분을 하되 2종은 7층 이하 지역과 12층  
이하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7층 이하로 구분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 아래 또 다시 별도로  
고도제한지구의 적용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7  
층 이하는 도시계획법에 정한 종별 주거지역 2종  
중에서 7층 이하, 12층 이하 지역으로 의무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종으로 구분하  
면 7층 이하로 고시하거나 12층 이하로 하게 되

어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고도제한지구의 적용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2종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고도제한지구 18m 5층 이하 지역으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법적으로 4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고도제한 1층으로 할 수도 있고 2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고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이렇게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층 이하 중에서 여기는 고도제한으로 이미 묶여져 있기 때문에 18m 5층 이하까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왜 7층 이하 제2종으로 바꾼다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7층 이하는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2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7층 이하 2종 또는 12층 이하 2종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고도제한은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玄壽漢委員 언제 받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항상 받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지금 의견청취인데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란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든 토지에 그 중의 하나가 적용됩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그 다음 3종주거지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용도지역으로 1종이 되면 4층 이하로밖에 못 짓는 거고 2

종이 되면 최고 7층까지 짓는 지역이 있고 12층까지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용도지역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고 용도지역과는 별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지구, 자연경관지구를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하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예를 들어서 2종 7층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도제한지구가 이 시점에서 해제될 수가 있어요. 18m 5층이. 그러면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용도지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더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층에 3층까지밖에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확정해놓는 것이 7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그 간격이 25m도로를 사이에 두고 형편에 안 맞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참고해달라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걸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8m 5층의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어떠한 땅이든지 간에 1종 또는 2종 7층이하, 2종 12층 이하, 3종 이 네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해요. 1종으로 지정을 하면 4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1종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종까지 7층이하로 해놓으면 7층이하의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지구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7층이하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은 고도제한 범위까지 18m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건축허가를 냈을 때 신청했을 때 결정이 난다 이거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니 무조건 18m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이거 덮어놓고 해줬다가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 중에서 3종으로 결정 날 지역도 있습니다. 3종이면 층수제한이 없어요.

○玄壽漢委員 아니 남들은 다 높게 짓는데 나만 묶어왔다 하니까 불만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용도지역상 3종으로 지정이 되면 층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용도지구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7층의 의미는 없다.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5층 18m 이하입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무악동 의주로변 문화역사미관지구를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일반미관지구로 전환하려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해놓은 것이 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는 2층이상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제한은 있지만 최고 제한은 없습니다. 층수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주로변하고 사직로변 그 다음 추사로 세군데에 대해서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려고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그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어떤 새로운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타당한 것 같다. 4층이하로 묶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풀어 가지고 2층 이상으로 짓게되면 고도제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20층이 올라가도 괜찮다는 말이나 해서 이거 조금 검토를 요한다 해서 이게 지금 반

려가 된 상태입니다.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丁炳煥委員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이 재상정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반려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최근 반려가 돼서 내려왔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해서 반려된 사항은 5년 이내에 다시 상정하기가 어려웠더라 상정이 되더라도 그건 또다시 상정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간을 좀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좀더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그 지역이 5층, 6층이 있는데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4층이하로 돼서 그 지역이 낙후됐을 때 과연 개발이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무악동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완화됐죠? 이거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네.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재건축 지역에 단독이 있는데 단독을 다세대로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공부상에는 다세대로 전환했는데 그러면 다세대로 하면 그것이 요건을 다 갖춰야만 다세대로 허가가 나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그걸 다세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등기상으로만 다세대로 한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말씀하신 게 건축물대장에 있습니까?

○丁炳煥委員 지금 다세대는 건축물대장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그것이 변경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단독인데 어떻게 해서 다세대로 즉, 말하자면 주차장범이라든지 뭐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조합원으로서 개별등록을 받아줘야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局長님! 등기상 다세대로 됐다고 그러면 개개인별 조합원 자격이 있

습니까?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원칙적으로 다세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변경이 안됐는데도 그걸 다세대로 해줘야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니죠.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에 변경이 되고 등기가 돼야만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지요.

○丁炳煥委員 아니 등기는 됐는데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것이 변경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건축물관리대장에 변경이 당연히 됐으니 다세대로 변경등기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우리 단독을 전부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도 개개인의 조합원 자격으로 받아줘야 되겠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 다세대로 전환될 수 있는 건축기준에 합치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다세대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한 6가구 정도 전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공부상에는 그것이 다세대로 전환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요건을 갖춰질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다세대로 분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달랑 집만 있고 옛날집도 건축법 위반해 가지고 짓고 그것도 100% 다된 겁니다. 그걸 다세대로 분류했어. 아무 것도 없는 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건물 번지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테니까 구체적인 걸 통보를 해주시면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행 재건축법에는 단독은 어떻게든지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지난번 어느 신문을 보니까 2001년 11월 9일자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현재 국회에 상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단독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법이 항간에 듣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임시조치법,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하고 재건축은 재건축법에 따라서,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한 법으로 묶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법재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3월중에 3월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통과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법이 통과가 될지 모르겠고 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공포 후 6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아마 부칙 경과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사 이번 국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통과여부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안등이나 이런 시설

이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않겠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쪽에서 도로를 내면 보안등 이런 시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쪽에는 거의 완전히 됐는데 보안등은 전혀 안된 경향이 있는데 이걸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소관을 굳이 따지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사직동 26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기존의 전선줄을 옮기지 않은 데는 그대로 다 있는데 전신주를 전부 옮기고 도로를 낸 데는 한 8군데인가 달아야 되는데 토목과에 얘기도 안 해주고 현재 5~6개월 넘었는데도 안해줘요.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안 해주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말씀하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262번지 일대 일부분이 지금 한 20m 정도가 도로가 덜 되어 있어요. 국고를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쯤 될까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해동이 되면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청할 때 몇 m<sup>2</sup>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000m<sup>2</sup>입니다. 그 이하는 안됩니다.

○**吳錦南委員** 꼭 그렇게 돼야만 합니까? 주위 여건이 한 단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저도 별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은미 17:36-18:05

○**委員長 安載弘** 평창동 연립 붕괴사고 때 신속하게 대처해주신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그 다음에 국 소속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李漢九課長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안들은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의 보호나 또는 특별한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금년 한해도 국장님들을 위시해서 국 과장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결정 및 사업결정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39分 會議中止)

(17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2年度 建設交通局 所管 主要 業務計劃 報告의 件

○委員長 安載弘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보다 계장님들이 실무담당으로 중요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저 뒤에 앉으신 계장님들을 꼭 소개해주십시오. 이름 다 아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이번에 바뀐 사람들이 본인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생략을 하고 과장 중에서도 교통지도과장님으로 이병호과장님은 특별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토목계장은 안 나오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임급입니다마는 주요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주임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박종수 씨, 건설업무에 보상업무에 전문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이덕열 계장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시설계에 강영준, 주차장 건설에 권영배, 이제 막 와서 새로 온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에 김인원 씨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서무주임 강영인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의 과장계장 채인기입니다. 이상 참석한 간

부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2年度 主要業務計劃

(建設交通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동단위로 3면씩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면당 주차관리요원을 1명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면이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10면도 있고 5면도 있고 20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과연 1명이 200면을 관리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처음 단계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면 단위로 해서 우선 시범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옮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이 작년도에 시안이 잡혀 가지고 연말이다 올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그 시행시기에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우선 작년도에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해서 구상을 200면당 1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확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사람을 우선 시행을 한 달 동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4월달 가면서 지

역여건이나 특성에 맞춰서 동이나 여러 구의원님들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안이 된다면 운영계획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운영계획을 대충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운영하는데 일선에 나가서 잘못하면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살 수가 있거든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큰 원칙으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동에서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누구든지 보면서 동네사람들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행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근무과정인데요 매일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시간에 나오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하는지 도중도중에 근태를 소홀히 하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전일제가 있고 야간만 세우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만약에 전일제에다 다른 차를 세웠을 때 어떤 권한을 부여해줄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내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당연히

**○吳錦南委員**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전일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와서 세웠다 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시키는 것인지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분들이 단속권을 가지니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견인을 해야되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당직실로 연락을 하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민원 1건 들어와 있는 거 있으시죠? 통의동에 인도를 단둥고 일방통행을 해달라 하는 것이 아마 100여 명 이상 받은 건이 와있을 겁니다. 민원을 경찰서에도 넣고 구청에도 넣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고가 일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금년 3월말이면 기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에 입찰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3월말 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을 한번 보안을 하시고 또 민원을 넣으신 그 대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하고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해결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담당 과장께서라도 가서 보시고 그분하고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계약된 상대방에 문제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앞으로 신년도 되다보니까 하수도나 기타 여러 가지 토목에 대한 정비사업이 많이 동에서 들어올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애깁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현재 3개월 하고 또 3개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거기에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마스라고 하면 아주 소형차량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서, 뒤에다 짐을 싣기 때문에 그 차를 살 때는 차고지증명제를 6개월치를 거기에 서류를 같이 넣으라고 합니다. 이분이 영세업을 하는 분이 차고지증명을 땀수가 없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을 6

개월로 만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동에서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해줍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공영주차장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22만원, 23만원 주고 뺏니다. 때 가지고 가서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을 초래해주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면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대형차량이라면 모르지만 소형차의 차고지증명을 할 적에는 연장해서 해주는 거니까 3개월만 하고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아니면 뒷순번이 많지 않으면 그대로 연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조금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운송알선업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깊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하시는 분들한테 그 한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차를 사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타 차가 와서 주차를 시켰을 때 신고를 하면 견인업체에서 고급차다 해서 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었 그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중·소형차는 견인을 해가도 대형차나 고급차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견인업체가 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대형은 사실 저희들이 문을 열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좀

○丁炳煥委員 그것이 아니고 키를 여는 것보다도 견인업체가 주차시 관리할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형차만 가져가나봐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종로에서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 고급차라고 견인업체에서도 기피하는 현실인데 우리 交通指導課長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交通指導課長 李炳虎 交通指導課長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소형이나 그거에 구분없이 신고가 되면 즉시 견인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와서 이러한 대형이나 소형차량이 구분 돼서 견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지난 우리 구정에 연 4일인가 휴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는 곳에 타 차가 와서 주차를 해놓고 구청 상황실인가 신고를 하니 견인업체에서 견인해갈 사람이 없어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한달에 4만원씩 내는데 견인을 안해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견인업체에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견인을 못해간다. 4일 동안 방치해놓고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지도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交通指導課長 李炳虎 연휴기간 동안 그런 민원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견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그런 연휴기간이나 이런 명절기간 동안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어쨌든 간에 연휴가 되더라도 견인을 해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局長님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사유지 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해서 그건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사유지가 어렵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선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지에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은 노련한 사람들 같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일부러 우리 포장한 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불법으로 우리가 했다. 소유권자한테 먼저 보상을 하지 않고 했다 해가지고 5년 동안의 사용료를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까지 가서요. 그렇게 했고 우리가 포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하고, 보상만 주고 해결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밀어붙이겠는데 사용료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그 도로가 만약 어떤 침수돼서 완전히 파손됐다. 사람이 통행할 수 없다 해도 손을 못 댈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래서 지금 차선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소유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의를 징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고 저희 지역 인왕산 사찰 올라가는데 어려운 현실이고 그래서 서울시의 모 직원한테 이걸 의뢰했더니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지정해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살 수가 있다 하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지금 신규공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럼 우리 인왕산 같은 경우도 거기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도시계획선으로 확정을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도시계획선 긋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의 도로에 금을 그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범으로도 20년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매수청구권까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장기계획으로 20년 동안 재정운영계획을 짜봐도 그 매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나눠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쁜 것도 못하는 마당에 그런 사유지 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긋는다, 긋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후속적인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丁炳煥委員** 이 지역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대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길에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되고,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서라도 소유자한테 매입해서라도 이것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하계된 것은 위원장님의 커다란 배려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2시에 시간을 잡으라고 늦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지난해에도 하수도 준설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큰 재난이 잦아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관이 오래 돼있고 노후된 하수관에다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걸 보면 다 덮어놨어요.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걸 덮어놔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엄청났던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金福同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준 일이 있거든요. 국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수관을 덮어놓은 집에는 불법주차라든지 어떤 명분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옳으신 지적으로 봅니다.

○**金福同委員** 제 얘기는 빗물받이에다 장판같은 걸 덮어놔 가지고 비가 왔을 때 비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덮어놔서 때는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이 사람들 상습적으로 덮어놓으니까 이런 사

람들이 주차한 것에 대해 법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고발조치를.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배수구를 개인이 그렇게 막는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金福同委員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하면 더욱 좋겠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종로구의 준설장비가 부족합니까? 土木課長! 답변해보세요.

○土木課長 鄭璣哲 준설장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金福同委員 사람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골목길이나 하수관 등 보이지 않는 이런 곳의 행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준설문제는 시급한 일이나 곳곳에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課長! 어떻습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 관내에 준설하기 위해서 준설비가 올해 2억이 책정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土木課長 鄭璣哲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다음 준설 후 끊어낸 찌꺼기를 그곳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즉각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鄭璣哲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가능합니까?

○土木課長 鄭璣哲 물 빠지는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리고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보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얼굴에다 살짝 화장하는 것처럼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바닥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이런 걸 끊어내고 했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옳으신 지적입니다.

○金福同委員 그곳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면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역시 하수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헛공사가 된다 하는 애깁니다. 또 다음은 우리 종로구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속에 하수관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옛날의 토관으로 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웬만한 중량의 차량이 지나면 붕괴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수관이 가장 낙후된 곳이 어딘가를 짚어서, 몇 십년 된 이런 곳을 찾아내서 하수공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수공사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6가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거요. 그 사람들이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네.

○金福同委員 16명에게 1억 9,300만원 위탁해줬지요? 그 사람이 너무나 비싸게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내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지 말고 한 두칸이라도 당신 억울하면 구청에 얘기해서 늘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해봤거든요. 사실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들이 큰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봅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두 라인 정도 붙여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최근에 그분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 쟁송절차에 의한 방법도 지금 3~4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일단 그 사람이 소송을 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풀어서 공직자와 민간인과의 유대관계도 있거니와 그 사람이 맡아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으면 우리 종로구청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면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놓고 한 사람이 100면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곳 저곳 산재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정해서 아무튼 70면이나 50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좁혀줌으로써 관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그 부분도 한달간 우리가 시행하면 저희들이 잘못을 찾아내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언제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재무건설 소속 위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본회의 개최시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주차장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로진입 폭이 4m이하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과 관련지어서 아마 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서울시의 답변을 얻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차단속 완화지역 설정문제를 제가 거론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불만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차 단속하는 것이 사실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소위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은 주차단속 완화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완화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청동

에 가시면 총리공관 입구에 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는 점심시간으로 해서 한두 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주차단속 완화구역으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좀 확대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겨울이 지나면 또 여름이 와서 물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金福同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康亨宇局長이나 土木課長께서 철저한 대비를 하셔서 가지고 잘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전에 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재해를 입고 나서 보완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재해대책기금이라도 사용해서 우기가 닥치기 전에 철저하게 정비해서 똑같은 피해가 두번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8억의 예산을 재무건설위원회는 토목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품질이 상당히 조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포장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또다시 땀땀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과 관련된 공사의 품질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도로포장을 하는 데 적용하는 기본적인 두께가 평균 5cm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의 품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손된 도로와 관련지어서 구멍이 뚫리거나 파손된 경우에 땀땀이라고 해서 메꿈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어떤 데는 콘크리트로 하는 곳도 있고 아스콘을 이용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도 국장과 과장이 계시는 동안에는 종로구에서 도로포장과 아울러 파손된 도로의 보수, 치수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가 종로구에 와서 일하는 동안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없겠다 하는 각오로 주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사용료 있잖아요. 거주자우선

주차 사용료는 3개월에 한번씩 받는 거는 아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지침이 아니고 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주차장사용료는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죄송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康亨宇 建設交通局長! 각 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徐明一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土木課長 鄭璣哲  
交通行政課長 高成九  
交通指導課長 李炳虎